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437
----------	------

2026년 3월 13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 안 자 : 이숙자 의원(찬성자 23명)
나. 제 안 일 : 2026년 2월 9일
다. 회 부 일 : 2026년 2월 12일
라. 상 정 일 : 제3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6년 3월 10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숙자 의원)

가. 제안이유

-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수자원봉사자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특히, 직전 연도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와 장기간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수행한 자를 우수자원봉사자로 구분하여 정의함으로써 제도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누적 봉사시간이 많은 우수자원봉사자에게 건강검진

혜택 및 근조기 지원 등 실질적인 예우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과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가. 우수자원봉사자의 기준을 직전 연도 200시간 이상 또는 누적 10,00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제6호).
- 나.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중 일부 항목을 누적 10,00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에게 한정하여 차등 지원하도록 함(안 제10조의4제2항 단서).
- 다. 누적 10,000시간 이상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위한 혜택 지원 및 근조기 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10조의4제2항제4호 및 제5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입법예고(2026. 2. 20. ~ 2. 24.) 결과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가. 조례개정안의 취지

- 본 개정조례안(이하 '본 개정안'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 참여로 지역 사회에 기여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우수자원봉사자의 기준(안 제2조제6호 신설)을 신설하고, 누적 10,000시간 이상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안 제10조의4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 〉

조 문	주 요 내 용
제2조(정의)	- “우수자원봉사자” 정의 신설 ① 직전 연도 200시간 ② 누적 10,000시간 이상 (제6호 신설)
제10조의4(우수자원봉사자 지원 등)	- 건강검진을 위한 혜택과 근조기 지원은 누적 10,000시간 이상 우수자원봉사자로 한정(제2항 단서 신설) - 누적 10,000시간 이상 우수자원봉사자에게 건강검진을 위한 혜택 지원, 근조기 지원(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 이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1만 시간 이상 봉사자 지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 효과가 부족하고, 우수자원봉사자 인증카드 혜택이 서울시립 체육 시설 8개소로 한정되어 연령이 높은 우수자원봉사자들은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는바,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함) 우수자원봉사자의 예우 및 지원 강화를 위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나. 세부내용 검토

1) 우수자원봉사자 정의 신설(안 제2조제6호)

- 안 제2조제6호는 “우수자원봉사자”를 ① 직전 연도에 20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 ② 누적 자원봉사활동 시간이 10,000시간 이상인 자로 명확히 하여 조례의 해석상 의문점을 없애고,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함으로써 조례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우수자원봉사자” 정의는 경기도에서만 정의로 규정하고 있음.
 - 경기도는 “우수자원봉사자”를 직전 연도 100시간 또는 누적봉사 5,000시간 이상 봉사시간을 갖추고 모범적으로 봉사 활동을 사람으로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사람(「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조제6호)으로 하고 있음.
 -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5조제1항에서 “연간 자원봉사활동실적이 우수한 사람(이하 “우수자원봉사자”라 한다)”이라고 하고 있고,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제1항에서 “자원봉사활동실적이 우수한 사람(이하 “우수자원봉사자”라 한다)”라고 하고 있으나 봉사시간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음(2026년 2월 18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현행 자치법규 검색 결과 참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5. (생략) 6. “우수자원봉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원봉사자로서 제10조의4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가. 직전 연도에 200시간 이상 자원봉사 활동을 한 자 나. 누적 자원봉사활동 시간이 10,000시간 이상인 자

- 이는 현재 서울시 우수자원봉사자 선정 기준인 직전 연도 200시간 이상 봉사자 또는 누적 10,000시간 이상 봉사자 선정 기준을 조례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하겠음.

〈 우수자원봉사자 선정 기준 〉

- 선정목적 :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지속적 참여 유도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0조의4(우수자원봉사자 지원 등)
 - 선정기준
 - 소속기준 : 서울시 내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에 소속된 자원봉사자
 - 봉사시간 기준 : 직전 연도 200시간 이상 봉사자 또는 누적 10,000시간 이상 봉사자
- ※ 출처 :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추가제출자료 책자』, 위원회 공통요구 자료 39번, 29면 재인용.

- 최근 5년간 서울시 자원봉사자의 연평균 활동 시간은 약 22시간에서 25시간으로, 200시간은 매주 4시간씩 꾸준히 활동해야 달성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이는 일회성 참여가 아닌 일상적·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우수자원봉사자”로 예우한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다고 하겠음.
- 다만, 2025년 기준 서울시 자원봉사자 실질 활동 인원은 약 34만 명(341,945명)이고, 이 중 직전 연도 20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한 자는 4,769명으로 실질 활동 인원의 약 1.4%에 불과하며, 사실상 극소수만 우수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는 기준으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우수자원봉사자” 정의(안 제2조제6호가목)에서 직전 연도 자원봉사 시간 기준에 대한 완화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누적 자원봉사활동 시간 1만 시간 이상(안 제2조제6호나목)은 연간 300시간씩 33년 이상 봉사활동을 해야 달성할 수 있는 시간으로, 2025년 서울시 자원봉사자 중 누적 1만 시간 이상 자원봉사자는 486명이며, 이는 우수자원봉사자를 넘어 평생 자원봉사 활동에 헌신한 공로자로, 일반적인 “우수자원봉사자”와 같이 정의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별도의 “명예 자원봉사자”로 구분하여 정의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최근 5년간 서울시 1인당 평균 봉사 시간 현황 〉

(단위 : 시간)

연도	자원봉사자 1인당 평균 봉사시간	성별		연령별(1인당 평균 봉사시간)							
		남	여	14세미만	14세이상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2021	22	21.1	22.7	7.7	12.7	20.1	17.2	21.8	42.7	61.7	83.5
2022	22.7	20.9	24	8.1	12.5	18.6	15.3	21.8	41.4	61.5	90.1
2023	24.1	21.5	25.7	8.3	12.7	18.3	15	21.7	41.3	57.9	89.7
2024	24.7	22.1	26.5	9	13	18.3	14.7	22.5	40.4	59.2	87.8
2025	25	21.6	26.9	9.3	12.2	18	14	21.5	40.4	55.6	81.7

※ 출처 : 2026년 2월 13일 행정국 별도 제출자료.

〈 최근 3년간 서울시 우수자원봉사자 현황 〉

(단위 : 명)

연도	등록인원 (전체)	활동인원 (등록인원 대비 비율)	우수자원봉사자			
			직전연도 200시간(A)	10,000시간 이상(B)	중복(C)	합계 (A+B-C)
2023	2,644,106	320,882 (12.1%)	4,087	433	197	4,323
2024	2,721,846	338,267 (12.4%)	4,510	461	225	4,746
2025	2,678,380	341,945 (12.7%)	4,769	486	237	5,018

※ 출처 : 2026년 2월 19일 행정국 별도 제출자료.

〈 2025년 연령별 우수자원봉사자 현황 〉

(단위 : 명, '25.12.31. 기준)

구 분	총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소 계	5,018	30	421	105	288	1,023	1,630	1,175	346
직전 연도 200시간 이상	4,769	30	421	104	287	1,017	1,599	1,093	218
누적 1만시간 이상	486	0	0	1	2	18	83	197	185
중복우수자	237	-	-	-	1	12	52	115	57

※ 출처 : 2026년 2월 13일 행정국 별도 제출자료.

〈 우수자원봉사자 인증카드 사용처 현황 〉

□ 인증카드 사용처 현황

- 근거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제1항 관련)
- 내용 : 개인사용료 및 수강료 30% 감면
- 대상시설 : 서울시립체육시설(총 8개소)

구분	시설명	위치	주요 프로그램
1	목동종합운동장	양천구	육상장, 축구장, 빙상장 등
2	산악문화체험센터	마포구	클라이밍장
3	서남권 돔구장	구로구	수영장, 체력단련장
4	서울월드컵경기장	마포구	축구장, 풋살구장
5	잠실종합운동장	송파구	야구장, 축구장, 체육관, 수영장 등
6	장충체육관	중구	보조체육관(농구장), 다목적실
7	창동문화체육센터	도봉구	체력단련장, 수영장, 체육관, 축구장
8	효창운동장	용산구	육상장(트랙), 축구장

※ 출처 :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추가제출자료 책자』, 위원회 공통요구 자료 39번, 30면 재인용.

- 이에 고령 봉사자들의 선호도와 필요성이 높은 “건강검진을 위한 혜택 지원”과 “근조기 지원” 규정 신설(안 제10조의4제2항제4호 및 제5호)은 기존 지원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수혜 범위를 현실화함으로써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을 공고히 하고 봉사자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 자원봉사 인정의 목적은 자원봉사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고, 자원봉사자의 공헌을 존중하여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각종 인정·예우 사업의 형태 및 대상자 선정기준 등은 각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바, 고령 우수자원봉사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한 건강검진을 위한 혜택과 근조기 지원은 가능하다고 하겠음(행정안전부, 『2026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2025년 12월, 53면 참조). 광역지방자치단체 우수자원봉사자 지원 내용은 <붙임 1> 참조.
- ※ 우수자원봉사자에게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없었으나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서울시 성북구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무료(「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 양주시는 건강검진 지원(「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6조제4항제3호), 의정부시는 누적 봉사시간 3,000시간 이상인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의정부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5호), 태안군은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검진비 또는 간병비 지원(「태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을 하고 있음(2026년 2월 20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현행 자치법규 검색 결과 참조).
- ※ 우수자원봉사자에게 근조기 지원을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로 조례상 명문 규정은 없으나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9조제2항 다양한 지원시책 추진에 따라 근조기 지원을 하고 있음(경기도자원봉사센터 (<https://www.ggvc.or.kr/>) 우수봉사자 가치증진, 최종방문 2026년 2월 20일 참조).
- 다만, 안 제10조의4제2항제4호 “건강검진을 위한 혜택 지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혜택”¹⁾은 금전, 물품, 용역(서비스)을 모두 포괄하는 매우 넓은 개념으로 혜택 지원이 어떠한 혜택을 의미하는지 그 구체적 범위가 모호함.

1) “혜택(惠澤)”은 은혜와 덕택을 아울러 이르는 말(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자연환경이나 사회 제도, 사업 따위가 사람들에게 주는 도움과 이익(고려대한국어대사전)을 말함.

- 이는 법령의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건강검진을 위한 혜택 지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명확성의 원칙”은 법령은 행정과 사법(司法)에 의한 법 적용의 기준이 되므로, 명확한 용어 등으로 분명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임. 헌법재판소는 “법률은 명확한 용어로 규정함으로써 적용대상자에게 그 규제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장래의 행동지침을 제공하고, 동시에 법집행자에게 객관적 판단지침을 주어 차별적이거나 자의적인 법 해석을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법규범의 의미내용으로부터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국민이 알 수 없다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은 확보될 수 없게 될 것이고, 법 집행 당국에 의한 자의적 집행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음(헌재 1992.4.28. 90헌바27등, 판례집 4, 255; 2001.6.28. 99헌바34, 판례집 13-1, 1255 참조).

- 특히, 행정국은 해당 사업을 비예산 사업으로 검진기관과 협약 체결을 통하여 연령대별 종합 건강검진 패키지 혜택을 이용(실비는 본인 부담)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안 제10조의4제2항제4호를 “건강검진 기관과의 협약을 통한 건강검진 이용 지원(실비는 본인이 부담한다.)”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건강검진을 위한 혜택 지원(검진기관과의 협약에 따른 우대 제공으로 한정하고, 이 경우 검진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우수자원봉사자 예우·지원 강화 계획(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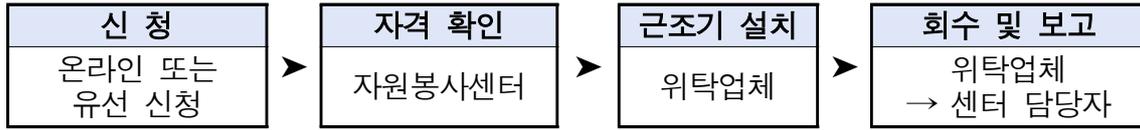
□ 맞춤형 혜택 지원(누적 1만 시간 이상)

① 건강검진 서비스

- (지원대상) 1만 시간 이상 우수자원봉사자 본인(인증카드 소지)
- (지원내용) 연령대별 종합 건강검진 패키지 혜택 적용(실비 본인부담)
- (지원방법) 서울시-민간 검진기관간 협약 체결로 종합 건강검진 혜택 이용
 - ▶ 40대, 50대, 60대 등 연령대 특성에 맞춘 검진 패키지 혜택 제공
- (추진방법) 공공병원, 민간 종합검진기관 협약 추진 예정
 - ▶ 생활권역별 검진기관(상급병원, 종합병원, 검진센터 등) 지속 발굴·협의

② 근조기 지원

- (지원대상) 1만 시간 이상 우수자원봉사자 본인
- (지원명의) 서울특별시장
- (운영절차)



□ 소요예산

- 건강검진혜택 지원 사업: 검강검진기관 협약 체결로 진행(비예산)
- 근조기 지원 사업: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금

(단위 : 천원)

구 분	소요예산	산 출 근 거
합 계	2,500	
근조기 제작	850	170,000원 × 5대
근조기 배송	1,650	50,000원 × 33건*

* 서울시 60대이상 자원봉사자 수(465) × 60대 이상 평균사망을 7%(2024년 기준)

연간 약 33건, 월 3건(10~15일에 1회 정도)의 발생이 예측되나 장례기간 및 세탁 시간 등을 고려하여 5기 보유 필요

※ 출처 : 2026년 2월 13일 행정국 별도 제출자료.

○ 안 제10조의4제2항제5호 “근조기 지원”은 고령 우수자원봉사자(본인)에 대한 사후적 예우로써 의미 있다고 하겠음.

- 그러나, 누적 1만 시간 이상 우수자원봉사자에게 근조기(물품) 제공이 「공직 선거법」의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같은 법 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라 “대상·방법·범위”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하는바, 본 개정안에서 지원대상과 범위는 “누적 1만 시간 이상 우수자원봉사자(본인)”으로 명확하나, 방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예외 요건 충족을 위해 구체적인 규정(본인 장례에 한하여, 신청에 따라 근조기 1기를 무상 대여하고, 자원봉사센터 등 지정 기관이 설치·회수)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대법원(2015.10.15. 선고 2015도11392) 판결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 제4호가목 또는 나목에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의 행위 중 하나로 열거된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것으로는 자체사업계획에 의하여 예산을 그 편성 목적 및 절차에 따라 지출하였다는 부족하고, 그 금품제공행위와 관련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이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경우야 한다(대법원 2007.11.16. 선고 2007도7207 판결 참조)”라고 하고 있음.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이하 ‘목’ 생략)
2. 의례적 행위(이하 ‘목’ 생략)
3. 구호적·자선적 행위(이하 ‘목’ 생략)
4. 직무상의 행위
 -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이하 ‘목’ 생략)

※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민의 조사에 근조기 게시에 관한 질의회답”에서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선거구민의 조사에 자신의 직명 및 성명이 표시된 근조기를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의 조사에 이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위반된다고 하고 있는바 우수자원봉사자 근조기 지원시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 기재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음(중앙선거관리위원회 (www.nec.go.kr)-정보공간-선거법규-서면/인터넷질의-2016-10-19 참조).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숙자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437
----------	------

발 의 년 월 일: 2026년 02월 09일
발 의 자: 이숙자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고광민, 김영옥, 김영철, 김원태, 김재진, 김태수,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유만희, 윤기섭, 윤종복, 이성배, 이종환, 이효원, 임춘대, 정지웅, 최민규, 최유희, 홍국표, 황철규 의원(23명)

1. 제안이유

-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수자원봉사자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특히 직전 연도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와 장기간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수행한 자를 우수자원봉사자로 구분하여 정의함으로써 제도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누적 봉사시간이 많은 우수자원봉사자에게 건강검진 혜택 및 근조기 지원 등 실질적인 예우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과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우수자원봉사자의 기준을 직전 연도 200시간 이상 또는 누적 10,00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 제6호)
- 나.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중 일부 항목을 누적 10,00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에게 한정하여 차등 지원하도록 함(안 제10조의4 제2항 단서)

다. 누적 10,000시간 이상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위한
혜택 지원 및 근조기 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10조의4제2항제4호
및 제5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우수자원봉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원봉사자로서 제10조의4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가. 직전 연도에 20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

나. 누적 자원봉사활동 시간이 10,000시간 이상인 자

제10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지원은 제2조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제10조의4제2항제2호 중 “누적 10,000시간 이상 우수자원봉사자”를 “우수자원봉사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강검진을 위한 혜택 지원

5. 근조기 지원

6.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③ (생 략)

4. 건강검진을 위한 혜택 지원

5. 근조기 지원

6.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지원

③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에 기여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수자원봉사자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누적 봉사시간이 많은 우수자원봉사자에게 건강검진 혜택 및 근조기 지원 등 실질적 예우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과 지속 참여 및 봉사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서울특별시 관련부서(행정국 시민협력과) 확인 결과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지원하는 건강검진 혜택과 근조기 지원은 서울시 소속 공무원 및 배우자·직계가족에게 제공되는 혜택¹⁾과 동일하며, 우수자원봉사자수는 약 400명(2025년 기준)이라는 점, 근조기 지원이 필요한 장례식 등의 발생빈도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비용발생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용추계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신 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계분석관	권 봉 수

☎ 02-2180-7952
e-mail : hong1004@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1) 건강검진 혜택 : 배우자 및 직계가족도 협약 검진기관에서 서울시 공무원 검진패키지 가격으로 검진 가능(수검자 비용 부담),
근조기 지원 :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사망 시 배송업체와 단가계약을 통해 근조기를 장례식장 등에 배송회수